

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3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‘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’가 시행(’20.1.4.)됨에 따라 우리시는 행복기본계획 수립,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, 행복정책 공동 개발 및 연구,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

나.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현재 36개의 지자체(서울시 7개 자치구 포함)로 구성되어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행복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.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, 우리시의 행복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효과적인 협력체계로서 작용할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개요

-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
- 명칭 :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

○ 구 성 : 36개 지자체 ('18.10.17. 창립총회 개최)

(2020.6월 기준)

| 서울(8) | 경기(6) | 강원(3) | 인천(3) | 대전(2) | 충청(5) | 전라(4) | 경상(2) | 광주(3)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시, 종로, 도봉, 은평, 양천, 강남, 성동, 서대문 | 수원시, 안양시, 구리시, 광주시, 여주시, 이천시 | 춘천시, 태백시 평창군 | 서구, 연수구, 중구 | 대덕구, 유성구 | 증평군, 서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 | 전주시, 완주군, 고창군, 나주시 | 구미시, 의성군 | 서구, 동구, 광산구 |

※ 상임회장(김승수 전주시장), 사무국(서울시 서초구 소재, 사무국장 김현희)

○ 회의운영 : 정기회는 연2회 개최

※ 임시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

나. 협의회 기능

-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-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-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·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
-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('20년도 예산 기 편성)

- 매년 협의회 분담금(7백만원)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정책팀 임승현(☎ 2133-7985)

「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」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2.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4.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5.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
6.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<별표>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.

제2장 임원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공동회장(상임회장 1인 포함) 3명
2. 부회장(권역별) 10명 이내
3. 사무총장 1명
4. 감사 2명

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.

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3장 협의회 운영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상임(공동)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 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

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“별지 제1호서식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고문과 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. 단,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

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,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실무협의회 등)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6조(사무국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7조(경비부담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제18조(수당 등)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의회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1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

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

· 2018. 10. 17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운영세칙은 ‘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’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와 ‘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’ (이하 “사무국” 이라 한다)의 활동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소)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3조(사무국) ①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,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,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실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행복실현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정책 입안
2.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 및 자료수집 등
3.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, 결과 관리
4.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·회계 관리
5. 기타 협의회와 협의·관련된 사항

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.

제4조(사무국장관과 직원) ① 사무국장관과 사무직원은 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균등하게 파견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받아 임명 할 수 있다.

②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③ 사무국장관과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국장관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고,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